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단620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1,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172,041,200원 한도 내에서,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57,166,000원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9,207,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1항)

부동산 목록

1. (1동 건물의 표시)

순천시 C에 있는 D아파트 E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경사지붕 18층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F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84.964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순천시 C 대 35,978.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5978.4분의 59.7705

2. 제주시 G 전 566㎡ 중 1/2 지분

3. 서귀포시 H 지상 일반목구조 이중그림자형글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58.8㎡, 2층 25.08㎡

4. 서귀포시 H 대 667㎡. 끝.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소외 체납자 B의 국세체납

- 1) 소외 체납자 B은 전라남도 순천시 I 소재 사업장에서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 참조).
- 2) 소외 체납자 B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올렸고, 이에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2020. 1. 28. 차명계좌에 대해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소외 B은 2020. 11. 18. 차명계좌를 통해 누락한 매출액을 포함하여 2017 ~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 3)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수정신고서를 접수한 뒤 소외 B이 2017 ~ 2019년 차명계좌를 통해 누락한 현금매출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의거 현금영수증발급 의무위반 과태료(아래 <표1> 10행)를 2020. 12.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고, 2021. 1. 4.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2021. 1. 31.을 납부기한으로 납부고지 하였으며, 소외 체납자 B은 소제기일 현재 이를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14건 총 1,125,567,88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

<표1>소재기일 현재 소외 B의 국세채납액 등

(단위 : 년, 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채납액	피보전채권 해당여부
부가가치세	2017.2기	'17.12.31.	'21.01.31.	3,632,380	4,231,670	여
부가가치세	2018.1기	'18.06.30.	'21.01.31.	12,138,250	14,140,930	여
부가가치세	2018.2기	'18.12.31.	'21.01.31.	32,932,570	38,366,360	여
부가가치세	2019.1기	'19.06.30.	'21.01.31.	64,915,410	75,626,350	여
부가가치세	2019.2기	'19.12.31.	'21.01.31.	50,081,500	58,344,920	여
부가가치세	2020.2기	'20.12.31.	'21.05.15.	3,488,220	3,970,400	부
부가가치세	2021.1기	'21.06.30.	'21.05.15.	5,316,950	6,050,090	부
근로소득세	2019.02	'19.02.28.	'21.01.31.	10,421,080	12,012,610	여
과태료	2020	'20.12.31.	'20.12.31.	474,795,610	597,292,730	여
종합소득세	2017	'17.12.31.	'21.01.31.	973,430	1,002,630	여
종합소득세	2018	'18.12.31.	'21.01.31.	12,397,240	14,442,610	여
종합소득세	2019	'19.12.31.	'21.01.31.	241,975,890	281,901,740	여
종합소득세	2020	'20.06.30.	'20.11.30.	6,560,000	7,752,200	부
종합소득세	2020	'20.12.31.	'21.08.31.	9,380,460	10,432,640	부
합계				929,008,990	1,125,567,880	
피보전채권 해당여부 '여' 합계				904,263,360	1,097,362,550	

나. 소외 B의 부동산 처분 경위

소외 B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지로 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1, 2, 3, 4 기재 부동산을 <표1>과 같이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기 전 배우자인 피고 A에게 2020. 9. 1. 별지목록 1, 3, 4 기재 부동산을 2020. 10. 5.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다.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A는 소외 B의 배우자입니다(갑 제4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우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 4295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다.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 보건대, 원고의 조세채권은 <표1>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납세의무가 모두 성립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소외 B이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이 납부고지 함으로써 실제 채권이 성립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소외 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별지목록 1, 2, 3, 4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2)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초과

우리 대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소외 B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20. 9. 1. 별지목록 1, 3, 4 기재 부동산과 2020. 10. 5.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약 1개월 동안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해행위로 이는 동일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0. 9. 1. 소외 B의 적극재산은 848,241,959원이고 소극재산은 1,562,746,150원이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갑 제9호증 소외 B의 재산자료현황표, 갑 제10호증 금융거래회신 참조).

<표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외 B의 채무초과

(단위 : 원)

구분	종류	세부내역	재산가액	비고
적극 재산	부동산	[집합건물]전남 순천 C에 있는 J호	395,000,000	별지목록1
	부동산	[토지]제주 제주 G	57,166,000	별지목록2
	부동산	[건물]제주 서귀포 남원 H	278,041,200	별지목록3
	부동산	[토지]제주 서귀포 남원 H		별지목록4
	예금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470,865	
	예금	L 주식회사 (계좌번호 2 생략)	35	
	예금	L 주식회사 (계좌번호 3 생략)	5,462,560	
	예금	M조합 왕운지점 (계좌번호 4 생략)	39,168,877	
	예금	M조합 왕운지점 (계좌번호 5 생략)	1,091,309	
	예금	N조합 낙안지점 (계좌번호 6 생략)	13,674	
	예금	우체국 (계좌번호 7 생략)	9,860	
	합 계		777,424,380	
소극 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등	1,097,362,550	
	근저당	M조합 (별지목록 3, 4 기재부동산)	195,000,000	
	근저당	M조합 (별지목록 1 기재부동산)	306,000,000	
	합 계		1,598,362,550	
순자산		적극자산 - 소극자산	△820,938,170	
사해행위		적극재산(별지목록1, 2, 3, 4)	730,207,200	
채무초과		순자산 - 사해행위	△1,551,145,370	

다. 소외 B의 사해의사

-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 2) 소외 B은 원고로부터 2020. 1. 28. 해명안내를 받고 2020. 11. 18. 자진하여 수정신

고하였습니다. 그 사이 2020. 9. 1. ~ 2020. 10. 5.에 걸쳐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전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는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등)

피고 A는 소외 B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소외 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B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는 소외 B에 대해 채납추적조사 과정에서 채납자의 금융조회 실시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채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어도 금융조회를 실시한 때인 2022. 4. 12.이 소외 B의 사해행위를 안날이라 할 것입니다.(갑 제11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일괄)).

6.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A는 2021. 6. 29.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인 소외 O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번호 제29053호로, 2021. 9. 24.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

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인 소외 P에게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번호 제85145호로, 2021. 6. 28. 별지목록3, 4 기재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인 Q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번호 제334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승소하여도 별지목록 1, 2, 3, 4 기재 부동산이 전부 피고 A를 거쳐 선의의 전득자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1,061,746,150원을 한도로 별지목록 1, 2, 3, 4 기재 부동산의 부동산가액 730,207,200원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제외한 229,207,200원을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 A와 소외 B 사이에 2020. 9. 1.과 2020. 10. 5.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 A는 229,207,2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소장 5페이지 하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20. 9. 1. 소외 [B]의 적극재산은 777,424,380원이고 소극 재산은 1,598,362,550원이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2020. 10. 5. 소외 [B]의 적극재산 중 별지목록 2 기재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갑 제9호증 소외 [B]의 재산자료현황표, 갑 제10호증 금융거래회신 참조).

